

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24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3. 9. 12.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(2013년 12월 31일)이 도래함.
-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의거 조문을 정비함.

주요내용

- 가.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연장 변경 (안 제3조의2)

개정조례안 : 불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, 동법시행령 제3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있음(불임)

- 입법예고 : 2013. 8. 2 ~ 8. 20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정의는” 을 “뜻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이라 함은” 을 “이란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이라 함은” 을 “이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이라 함은” 을 “란” 으로 하며, “제3조의 규정에 따라” 는 “제3조에 따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이라 함은” 을 “이란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이라 함은 안산시” 를 “이란 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 라 한다.

제3조 중 “시장” 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한다.

제3조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안산시” 를 “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하며,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“인” 을 “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통합기금에 자금 을 예탁한 각 기금별 담당 국·소·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1.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전문가
2. 안산시의회 시의원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제1항 중 “통할” 을 “총괄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“때” 를 “경우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 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시의회”를 “안산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제2호서식에 의하여”를 “제2호서식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“제3호서식에 의하여”를 “제3호서식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9조제3항제1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3조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과 | | 예 산 과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임 안 자 | 실·과장 직위·성명 | 예 산 과 장 박 미 라 |
| | 담당·팀장 직위·성명 | 경영평가계장 이 상 우 |
| | 담당자 성명전화 | 김 민 정 (행정 2807) |

신·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통합관리기금"이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. 2. "보유자금"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(예금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3. "시금고"라 함은 「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. 4. "통합기금관리관"이라 함은 각 기금의 회계 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·관리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. 5. "기금운용관"이라 함은 안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. | <p>제2조(정의) 뜻은</p> <p>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란 2. 이란 3. 란 4. 이란 5. 이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<p>.....</p> |
| <p>제3조(통합기금의 설치)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.</p> | <p>제3조(통합기금의 설치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.....</p> <p>.....</p> |
| <p>제3조의 2(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| <p>제3조의2(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 |
| <p>제4조(통합기금의 재원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~4. (생 략) 5. 기타 수익금 | <p>제4조(통합기금의 재원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~4. (현행과 같음) 5. 그 밖의.....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6조(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 <u>안산시</u>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 및 통합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(생 략)</p> <p>1~5. (생 략)</p> <p>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</p> | <p>제6조(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 시..... <u>안산시</u></p> <p>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그 밖에 <u>회의에 부치는</u></p> |
| <p>제6조의 2(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통합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별 담당 국·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전문가, 시의회의원</p> <p>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③ ~ ④ (생 략)</p> | <p>제6조의 2(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명명</p> <p>.....</p> 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별 담당국·소·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전문가</p> <p>2. <u>안산시의회</u> 시의원</p> <p>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7조(위원회의 운영)</p> <p>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 | <p>제7조(위원회의 운영)</p> <p>① <u>총괄</u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경우</u>....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관련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기금별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<u>별위</u>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| <p>⑤..... 경우.....</p> <p>⑥..... <u>별위에서</u></p> |
| <p>제9조(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)</p> <p>① <u>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<u>예탁기간 만료 전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 | <p>제9조(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)</p> <p>① <u>제8조에 따라</u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..... <u>제2항에 따른</u></p> |
| <p>제10조(예탁금의 상환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각 기금운용관은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</u></p> | <p>제10조(예탁금의 상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u>제1항에 따라</u> 경우.....</p> |
| <p>제12조(회계공무원의 지정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1~5. (생 략)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.</u></p> | <p>제12조(회계공무원의 지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</u>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3조(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)</p> <p>①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회계연도 통합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<u>시의회</u>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<u>제2항에 의하여</u> 작성된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는 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| <p>제13조(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)</p> <p>①..... <u>안산시의회</u>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<u>제2항에 따라</u></p> <p>.....</p> |
| <p>제14조(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통합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<u>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⑤ (생 략)</p> | <p>제14조(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.....<u>제3항에 따라</u></p> <p>.....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5조(배정계획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통합기금운용관은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각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월별지 출계획서에 <u>의하여</u> 각 기금의 월별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통합기금관리관이 이를 확정 한다.</p> | <p>제15조(배정계획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u>제1항에 따라</u></p> <p>.....</p> |
| <p>제16조(배정 및 통지)</p> <p>①기금운용관이 예탁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의 월별배정계획에 따라 별지 <u>제2호서식</u>에 <u>의하여</u> 통합기금배정요구서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통합기금 배정요구를 받은 통합기금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<u>제3호서식</u>에 <u>의하여</u> 배정하고, 이를 해당부서 및 시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16조(배정 및 통지)</p> <p>①.....</p> <p><u>제2호서식에 따라</u></p> <p>.....</p> <p>②<u>제1항에 따라</u></p> <p>.....</p> <p>....<u>제3호서식에 따라</u></p> <p>.....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9조(원리금 상환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1. 전년도 12월 16일로부터 <u>당해년도</u> 3월 15일까지의 분 : 3월 15일</p> <p>2~4. (생 략)</p> <p>④ 응자기관은 응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<u>당해</u>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생 략)</p> <p>⑥ 응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기타 휴무일인 경우에는 시금고 영업일에 준한다.</p> | <p>제19조(원리금 상환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해당</u></p> <p>.....</p> <p>2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....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..... <u>그 밖의</u></p> <p>.....</p> |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